

# 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의안번호	제192호	제 출 자	논산시장
제 출 일	2022. 11. 14.	회부연월일	2022. 11. 14.
<b>1. 제안이유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건강도시 조성사업 기본방향에 대해 심의·자문을 위하여 구성된 논산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 대한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</li></ul>			
<b>2. 주요내용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(안 제11조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위원의 임기 규정(2년 임기, 1회 연임) 폐지</li></ul></li><li>○ 운영위원회 비상설화 운영 규정 신설(안 제14조제3항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해당 안건 의결 후 자동 해산 규정 마련</li></ul></li></ul>			
<b>3. 검토의견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이 조례개정안은 논산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 대한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</li><li>○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,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, 제6조의5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</li></ul>			